



제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사처검사의 임명기한을 인사위원회 추천 후 30일 내로 명시〉

■ 이견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02호)

2025. 3.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견태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4. 11. 12.
3. 회 부 일: 2024. 1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사처검사 4명의 연임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부터 2개월 후이자 수사처검사 임기를 이틀 남겨둔 시점에야 완료되었음. 임기연장이 불확실한 검사는 수사 연속성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대통령 재가의 지연은 가뜩이나 인원이 많지 않은 수사처검사의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대통령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수사처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기함으로써 빠른 인력 충원을 도모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임명 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수사처검사)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8조(수사처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대통령은 제1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수사처 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u>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법 제8조¹⁾상 공수처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는 3년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다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그런데 최근 임기만료 예정인 수사처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이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추천 후 2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었음, 대통령의 공수처 검사 임명 지연은 수사 인력의 공백을 발생시켜 고위 공직자범죄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²⁾

현행법 제2조제1호가목³⁾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에 대통령을 포함하고 있음.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면서 공수처 검사의 임명권자이기도 한바, 개정안은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이해관계가 있어 공수처 검사의 임명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

특히, 공수처는 정원 85명의 소규모 조직이고 검사 정원이 총 25명이므로, 공수처 검사 임명이 일부라도 지연될 경우 수사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의의가 있음.⁴⁾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실제 대통령과 공수처 수사 간 이해충돌로 공수처 검사의 임명을 지체하더라도 별도로 강제할 수단은 없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

개정안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30일의 기한과 관련하여 인사 검증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2) 중앙일보, “공수처 검사 연임 재가 지연…수사 방해 얘기까지 나온다”, 2024. 10. 2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6970>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4) 공수처 검사의 정원은 총 25명이나 퇴직 등으로 인하여 2025년 3월 현재 현원은 14명(공수처장 및 차장 포함)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63